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2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 박상혁 · 김현정 · 최기상

김병기・김한규・노종면

이기헌 • 조승래 • 강준현

김남희 • 박성준 • 정일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.

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 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제2항 본문 중 "제19조"를 "제17조, 제18조 또는 제19조"로 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최초로 제17조, 제18조 또는 제19 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	제44조(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
해배상책임) ① (생 략)	해배상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<u>제19</u>	② <u>利17</u>
<u>조</u> 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	조, 제18조 또는 제19조
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	
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 다	
만,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	
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